

□ 임상가를 위한 특집 ④ □

» 구강진단 및 구강내과 영역의 관심사 «

- I. 상해진단서의 작성에 관한 법치학적 고찰.....김종열
- II. M.P.D. 증상의 구강내과적 처치.....김영구·정성창
- III. 구강내에 발생하는 연조직 질환의 처치.....이승우
- IV. 전신질환을 가진 치과환자의 치료계획시 문제점.....정운하
- V. 임상검사의 원칙 및 방법.....김종열·안대남

傷害診斷書의 作成에 關한 法齒學的 考察

Dentolegal Consideration on Dental Certifications.

延世大學校 齒科大學 口腔診斷學教室

副教授 金鐘悅

診斷書는 사람의 健康上의 狀態를 診察하고 그것을 醫學의 方法에 依하여 生理機能의 變調와 障得 및 傷害狀態를 觀察하고 그 原因 經過 및 結果等을 判斷한 文書이며 内容 및 用途등으로 보아一般診斷書, 健康診斷書, 傷害診斷書, 兵事用 診斷書로 区分할 수 있으나 一般診斷書와 傷害診斷書는 純의 上의 区分일 뿐 그 名稱에 있어 法的區分은 아니다. 診斷書를 作成하기에 앞서 齒科醫師는 患者를 診療함과 同時に 診療에 關한 事項을 診療簿에 記載하며 그 内容은 醫療法施行規則에 規定된 項目을 充實히 記載하여야 할 것이다. 則 이 때 作成된 診療簿에 따라 診斷書를 作成되므로 傷害 診斷書를 作成하기에 앞서 傷害患者의 傷害에 對한 診斷能力이 先決條件이며 學問的 誠實과 正直이 基本이 되

어 診療簿를 作成함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보겠다. 따라서 傷害患者의 診療記錄簿에는 患者의 人事項 및 病歷, 家族歷, 診療經過 및豫見, 治療內容(注射, 投藥, 處置等) 診療日時分이 明記되어 있어야 하며 其他 放射線寫眞, 臨床檢查記錄 等 傷害診斷患者에 關係된 資料들은 각별히 유의하여 一般患者의 資料들과 별도로 取扱保管함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一般的으로 公務員이 職務上 作成하는 文書인 公文書와 달리 一般開業齒科醫師가 作成 交付하는 傷害診斷書는 私文書이나 公的인 信憑力を 갖고 있으므로 慎重히 作成 해야 한다.

傷害患者 診療等에 記錄되어야 할 診斷事項을 要約한 것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History

Patient's name, age, sex,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When did the accident occur?

Where did the accident occur?

How did the accident occur?

Treatment elsewhere.

History of previous dental injuries, general health.

Did the trauma cause amnesia, unconsciousness, vomitting, or headache?

Is there spontaneous pain from the teeth?

Do the teeth react to thermal changes, sweet or sour foods?

Are the teeth sore to touch or during eating?

Is there any disturbance in the bite?

Clinical Examination

Recording of intraoral wounds and palpation of the facial skeleton.

Recording of injuries to oral mucosa or gingiva.

Examination of the teeth crowns for the presence and extent of fractures, pulp exposures, or changes in color.

Recording of displacement of teeth (i. e. intrusion, extrusion, lateral displacement, or avulsion).

Abnormalities in occlusion.

Abnormal mobility of teeth or alveolar fragments.

Palpation of the alveolar process.

Reaction of teeth to percussion.

Reaction of teeth to vitality tests.

a. Mechanical stimulation.

b. Heated gutta percha.

c. Ethyl chloride.

d. Ice

e. Carbon dioxide snow.

f. Electric vitalometers.

Radiographic Examination

Extraoral radiographs.

Intraoral radiographs.

傷害診断書 發給對象

傷害診斷書 發給對象이 되는 傷害한 人間의 完全性을 毀損하는 一切의 것을 말하며 卽 實力を 行事하여 사람의 身體를 損傷함에만 局限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暴行 以外의 不作爲에 依함이나 其他

過失 또는 故意에 因함이거나 自害傷害이거나 齒科醫師의 診療上의 過失이거나의 原因에 不問하고 一切의 外傷이 對象에 屬하며 關係者의 要求가 있을 때 이를 正當한 事由없이는 診斷書 發付를 拒否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診斷病名

病名의 記載는 世界保健機構에서 定한 疾病 傷害 및 死因分類에 따라하여 主觀的인 것은 避하고 確 實히 나타나는 形態學의 變化에 根據를 두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肉眼으로 觀察하는 것 等을 傷害診斷에서는 重視하고 必要한 其他檢查所見들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主가 되는 傷害를 病名에 記

□ 특집④ : 구강진단 및 구강내과 영역의 관심사 □
載하고 其外의 損傷들은 傷害部位와 程度를 症狀項目에 仔細히 記錄하도록 한다.

특히 傷害의 程度는 外觀, 發音, 咀嚼의 三大機能에의 損傷程度를 細分하여 表記하는 것이 보다 正確하다고 본다.

齒科領域損傷을 國際疾病分類와 解剖學의 및 治療의 觀點에서 分類한 Andreasen 氏의 分類法을 參考하면 다음과 같다.

Injuries to the hard dental tissues and the pulp.

N 873, 70. Crown infraction

N 873, 71. Uncomplicated crown fracture

N 873, 72. Complicated crown fracture

N 873, 74. Uncomplicated crown-root fracture

N 873, 74. Complicated crown-root fracture

N 873, 73. Root fracture

Injuries to the Periodontal tissues

N 873, 75. Concussion

N 873, 75. Subluxation(loosening)

N 873, 76. Intrusive luxation (central dislocation)

N 873, 77. Extrusive luxation (peripheral dislocation, partial avulsion)

N 873, 75. Lateral luxation

N 873, 78. Exarticulation (complete avulsion)

Injuries to the supporting bone

N 802, 20 (mandible) Comminution of alveolar socket.

N 802, 40. (maxilla)

N 802, 20. (mandible)

Fracture of alveolar socket wall.

N 802, 40. (maxilla)

N 802, 20. (mandible)

Fracture of alveolar process.

N 802, 40. (maxilla)

Fracture of mandible or maxilla (jaw fracture).

N 802, 42. (maxilla)

Injuries to the gingiva or oral mucosa.

N 873, 7. Laceration of gingiva or oral mucosa.

N 920, x1. Contusion of gingiva or oral mucosa.

N 920, x1. Abrasion of gingiva or oral mucosa.

□ 특집④: 구강진단 및 구강내과 영역의 관심사 □

傷害의 原因

傷害의 原因은 損傷을 받기 前의 狀態 即 齒牙의 生理的 및 病理的 및 其他 弱해진 狀態인 素因과 傷害의 主因인 外力 即 誘因으로 區分하여 생각 할 수 있다. 이에 있어 齒科醫師가 傷害診斷하는 主眼點은 어디까지나 傷害狀態에 對한 傷害部位, 傷害程度, 治療에 對한 判斷과 損傷을 받기 前의 狀態에 對한 推定의 素因分析이 되며 이를 明確히 診斷書에 밝힘으로써 所定의 義務를 다 하는 것으로 된다. 다시 말하면 誘因推定 및 分析은 담당搜查官

이나 法院의 所管業務로서 傷害診斷中의 齒科醫師가 行하는 誘因推定은 參考事項에 그칠 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特別히 傷害原因의 分析을 專問으로 하는 法醫, 法齒學者의 資格으로 鑑定依賴를 받은 것이 아닌 立場에서는 너무 細密히 과고들어 誘因을 專問의으로 推定法을 使用치 않고 억측할 必要是 全혀 없으며 傷害의 原因分析은 素因分析이 齒科醫師의 所管事項임을 分明히하여 이를 中心으로 하여 充實히 言及하여야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齒牙 損傷의 原因을 誘因과 素因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Prime causes

- Dental caries
- Pulp extirpation
- Attrition in the cervical area
- Periodontal disease, periapical disease
- Malposed teeth, bone disease
- Impacted teeth (foreign bodies hidding the oral structures)
- External root resorption
- Internal root resorption
- Enamel hypoplasia, radiation exposed enamel

Inducing causes.

- Fall injuries
- Battered child syndrome
- Injuries during play and athletics
- Fight injuries
- Traffic accidents
- Injuries due to convulsion, seizures (epilepsy)
- Medical errors in surgery
- Rough mastication

治療를 要하는 期間

傷害日數는 自然治癒日數와 加療를 要하는 日數로 區分하여 생각 할 수 있으며 이때 齒科醫師가 傷害診斷書를 作成함에 必要한 것은 自然治癒日數의 推定이 결코 아니며 診療期日은 加療日數를 論하는 것으로서 自己의 온갖 能力を 다하여 善管注意

에 입각하여 고칠 수 있는 日數를 經驗에 依하여 推定하고 記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期日은 患者가 來院하여 加療를 받지 않아도 自然治癒될 수 있기 전까지의 齒科醫師에 依한 加療期間을 말함에 혼동이 없어야 겠다. 따라서 治療를 要하는 期間은同一한 患者에 對하여서라도 齒科醫師個人의 診療

能力 및 方法, 投藥의 種類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性質의 것으로서, 常識에 벗어나는 현격한 差異가 있다던가 고의로 診療期間을 作造하지 않은 限差異가 認定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特히 注意하여야 할 것은 學問의 으로 認定되는 術式에 따라 加療를 함을 原則의 으로 할 때 客觀性이 있는 診療期間設定이 可能할 것이라는 點이다. 이에 歯科醫師가 傷害患者의 올바른 鑑別診斷과 이에 따른 治療原則에 對한 知識을 分明히 習得하고 日常 診療에서 教科書의 術式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範圍에서 行하는 良質의 診療를 固守하고 誠實한 加療와 事後指導를 通하여豫后의 判定能力을 키우는 훌륭한 經驗들이 뒷 받침 될수 있도록 함이 必要하다 하겠다.

흔히 傷害診斷으로 因하여 말썽이 起起되는 所見表記나 治療期間의 問題에 있어서 誇張이나 要領不得한 所見表記를 避하여야겠으며 正確한 臨床検査, 放射線検査와 診察等을 거친 다음 客觀的妥當性이 있는 判定을 하도록 努力할 것이나 이와 같은 努力의 結果라 하더라도 얻어진 歯科醫師의 意見의 어느 程度의 差는勿論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비록 見解差가 많다 하더라도 각者 自己의 意見을 客觀的으로 說明할 수 있고 所信껏, 自己能力껏 最善을 다해 診斷推定한 結果라면 公明正大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治療期間 即 加療期日을 基準으로 그 病이나 傷害의 輕重을 가리는 것은 크게 危險하며 많은 誤判을 가져오게 된다. 傷害患者의 受傷程度 및豫后에 關聯되는 諸般 與件等은 各樣各色으로 事例마다, 事例에 따라 學問의 根據下에 歯科醫師 각者の力量에 따라 誠實한 判定을 要하는 것이며 억지로 診斷期日을 規格化하려 한다든지 無條件 初診醫의 判定에 盲從하여 期日을 맞추어 보려는 態度는 不當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람은 診斷書를 發行할 能力を 올바로 具備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診斷書를 作成함에 있어서는 書式을 맞추는 能力에 앞서合理的 診斷ability이 先行條件이며 學問의 誠實과 正直이 基本이 되어야 함은 再論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治療期間을 一次治療에 要하는 期間과 補綴治療等 二次治療에 要하는 期間을 區別하여 表記하는 것도 必要하다고 본다.

虛偽診斷書

齒科醫師가 診斷書를 作成할 때에는 반드시 自己

□ 특집④ : 구강진단 및 구강내과 영역의 관심사 □

自身이 直接 診察하여야 하며 또 記載內容은 事實과 符合되어야 한다. 萬一 歯科醫師自身이 患者를 直接 診察치 않고 診斷書를 作成하면 비록 그 content은 事實과 符合된다 하더라도 醫療法의 罰則規定에 該當된다. 萬一 content이 虛偽일 때에는 刑法上 虚偽診斷書 作成罪가 成立된다. 이때 虚偽라는 것은 事實에 關한 것에 限하지 않고 判斷에 關한 것 까지 包含시켜 解釈하게 된다. 그러나 歯科醫師의 能力不足이나 施設不備로 不可抗力의 으로 온 誤診의 경우 大法院判例에서 보면 誤診한 結果 客觀的으로 真實에 反한 診斷書를 作成한 경우에는 犯意가 없으므로 罪가 成立하지 않는다고 判示하고 있다.

結語

齒科醫師는 患者的 疾病을 治療하고豫防하여 國民의 口腔健康을 增進시키는 外에 社會秩序維持에도 重要的役割을 하고 있다 하겠다. 特히 歯科의 傷害診斷書는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하며 그 頻度가 急增하고 있어 關係當局者나 法官들은 診斷書를 基準하여 多은 事件을 公平하게 處理하여 社會秩序를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歯科醫師는 疾病의 診療에 끽지않게 診斷書의 重要性을 直視하고 이를 올바로 發付하여 善意의 被害者가 없도록 努力하는 것 또한 歯科醫師의 使命임을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診斷書의 意義, 作成原則, 社會的効果, 이와 關聯되는 法의 問題等에 對한 教育과 訓練을 通하여 歯科醫師가 自己나름대로의 原則을 세워서 發行하는 것을 止揚하도록 法齒學教育 및 診斷學教育의 強化가 必要하다고 본다.

이를 通하여 歯科醫師들이 傷害診斷書를 쓰는데自身이 없어 蹊躇하여 甚한 경우에는 忌避하는 現象마저 버리지고 外國에서는 別로 볼 수 없는 診斷書로 因한 醫療事故를 흔히 誘發하는 特殊한 現象을 終息시킬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傷害診斷書는 發行初부터 紛爭을 안고 出發하는 것이므로 現實의 事實以外의 어찌한 推理도 容納되지 않으며 그 表現이 可能한 限縮된 말로 具體의 이어야 하고 傷害診斷書의 活用이 歯科醫師社會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法官 檢察 또는 搜查官이 對象이므로 歯科醫學을 理解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理解하여 올바른 판가름을 하게하는데 發行目的이 있음을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